

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

어린이가 왕!!

어린이보호구역(School-Zone)은 우리 아이들이 그 주인입니다.

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 따른 불이익에 앞서 소중한 우리 아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·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■ 불법주차 단속차량 과태료 상향조정 내용(2011. 1. 1 시행)

구 분	차 량 종 류 별 과 태 료		비 고
	승용자동차 등	승합자동차 등	
변 경 전	40,000원 (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)	50,000원 (동일장소 2시간 이상 6만원)	50,000원
변 경 후	80,000원 (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)	90,000원 (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)	08:00 ~ 20:00까지

어린이의 안전한 승·하차 보호

- ⊘ 일반차량 : 일시정지 및 앞지르기 금지
- 🚌 어린이통학버스 등 : 안전확인 후 출발



먼저 알아주세요~!

"어린이통학버스 등"이란?

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 자동차를 말합니다.



※ 어린이통학용 자동차:
학원·유치원·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

어린이통학버스 위반 범칙금

구 분	위반내용	벌점	범칙금 (승합 기준)
어린이 통학버스 (신고차량)	• 통학버스가 정밀표시 정차 중일 때 일시정지 및 앞지르기 등 금지	10점	5만원
	• 어린이(유아)가 승하차 시 안전 확인 후 출발 의무	15점	7만원
	• 보호자(보조교사) 탑승 의무 위반	없음	7만원
어린이 통학용자동차 (미신고차량)	• 성년의 동승자가 없을 시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인 후 출발	없음	7만원